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(가칭) 「금천청년꿈터」 민간위탁 동의안  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(가칭) 「금천청년꿈터」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2024. 상반기 금천청년꿈터 개관 예정으로 청년창업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바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대상시설 : 금천청년꿈터

명 칭	설치 장소	시설 규모	개소시기 (예정)	비 고
금천청년꿈터	범안로15길 22-5 (독산1동)	지하1층~지상9층 (연면적 1,269.19㎡)	'24년 상반기	

- 나. 위탁개요

- 1)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(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)

2) 위탁내용 : 금천청년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

가. 금천청년꿈터 시설 및 안전관리

나.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 선발·관리

다. 창업보육 프로그램 발굴·운영 및 특성화 사업 추진

라.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

마. 기타 청년창업 지원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위탁방법 : 위탁운영자 공개모집

4) 운영비 : 381,319천원(구비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기업 관리 및 경영,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전문지식과 축적된 인적, 물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
- 2) 이용자들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

라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청년창업 지원 및 육성에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, 금천청년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2) 민간위탁 시 청년창업 관련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한 창업 활동을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·운영이 가능하며, 유관기관 및 청년 창업기업 간 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함 .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3,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 제9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본 동의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소관 부서에서는 공고전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해 적정한 법인(단체)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**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**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[본조신설 2020.7.17]

**제6조(수탁기관 선정)**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, 심사항목 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,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

**제9조(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)**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,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, 단체 또는 법인 등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, 관리,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